

II. 보험제도 변화

- 2007년도 주요 보험제도 환경변화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FTA 협상 전개,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 시작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1) 개요

-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 2006년 2월 17일 동 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안을 발표한 이 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2) 통합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 (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
-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 (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
-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3)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

- (1)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에 있어 '원본' 개념과 '회수금액'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
 - (원본)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회수금액) 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수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전통적 예금 등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 (2)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연금신탁은 금융

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투자자로부터 요청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장외과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 보험계약(변액보험 포함)과 증권의 경우 동 규제의 대상이 아님.

(4)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5)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받도록 함.

※ 현재,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

(6)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

(7) 통합법 시행일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하고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

(8)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

※ 다만, 추후 업계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 방안이 마련 되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

(9)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위탁매매 계좌내의 현금)으로 한정하여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차단

-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금감위로부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함.

(10)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

(11)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 부과

(12)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에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 (14)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동법 제정에 따른 금융법의 체계 변화

- 동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은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됨.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7개 법률이 폐지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9개 법률이 일부 개정됨.

○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금년 중 국회에 동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

출처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6. 6.29. 참조

2. 보험업법 개정

※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6년 10월 19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1) 개정 이유

-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조사체제를 확립하는 등 보험관련 제도를 선진화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 (1) 현재 보험사는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당해보험사 보유자산에 한함)와 신탁업에 한정하여 다른 금융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며 부수업무의 영위도 법령상 열거된 사항으로 제한
- (2)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례에 준하여 보험사에 게 허용되는 겸영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도 포괄적으로 허용
- (3)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타 금융권과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차등적이고 실효성있는 보호장치 마련

- (1) 현행 보험업법은 전문성 등에 기초한 보험소비자의 구분 및 차등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 (2) 보험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여 설명의무와 보호 범위 등을 차등화

다. 공시제도의 합리화

- (1) 비교·공시의 대상 및 내용이 획일적으로 한정되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 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라. 상품개발시 금감위에 대한 사전 신고원칙을 사후 제출원칙으로 변경

- (1)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한 경우 관련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원칙이었음.
- (2) 사후 제출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감위에 사전 신고

마. 보험상품 기초서류 확인절차를 현행 2단계 중복확인에서 1단계만 거치도록 간소화

- (1) 독립계리업자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 중 1개 절차만 보험사가 선택하도록 자율화

출처 :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10.19. 참조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1) 검토배경

-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험산업과 의료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공보험 중심의 보장성 강화의 한계 극복 등의 니즈로 인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됨.

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내용

- 보건복지부 측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한계 등의 이유로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민영의료보험을 제한하고 있음.
 -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
 - 법정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이용을 억제함이 목적이거나, 민영의료보험 보장이 과잉이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논리
- 그러나 보험업계 등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한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보적 정책이며, 소비자들의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비용부담 증가를 초래를 지적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 방안을 소비자에 대한 보장범위를 축소 시키는 방향에서 찾기보다는 제도운용의 개선을 통해서 찾아야 함을

지적함.

-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본인부담액을 설정하여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억제하고, 의료 이용 실적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과잉수요 및 공급 문제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4. FTA 협상의 전개

※ 한국은 기존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과 FTA를 체결한 외에 지속적으로 FTA대상국을 넓히고 있음.

1)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2월에 시작되어 6월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 초안을 놓고 17개 분과별 제1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7월 10~14일에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이 진행된 후, 9월 현재 6~9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협상이 완료되었음.
- 현재 17개 분과 중 하나인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방식과 관련해서는 개방분야를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주의방식(positive approach)과 일단 개방하기로 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만을 열거하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approach)의 적용형태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
- 한편, 최근 협상과정에서 우체국 보험과 민간보험회사간의 동등 대우와 관련한 한·미 FTA 협정의 적용문제가 제기됨.
- 미국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금융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열거주의·포괄주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의무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비합치조치들(Non-Conforming Measures)'을 FTA 금융

협정문에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관련 비합치조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의 세 가지 무역자유화 원칙을 중심으로 부속서(Annex) 형태로 명기되고 있음.

2) 한·유, 한·중, 한·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 논의

-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경제공동체(메르코수르·MERCOSUR)와 중국 등과는 FTA 전 단계인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며 EU(유럽연합)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마침.
- 뉴질랜드를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8일 헬렌 클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간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를 내년 상반기중 시작하기로 합의함.

5.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 시작

1) 지급여력제도의 선진화

① 현황

-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는 IMF의 권고로 19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04년 3월부터 소정비율 100% 도달
 -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EU식 지급여력제도 방식을 준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음.
 - EU는 "Solvency I"을 통하여 회원국에 지급여력제도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EU 회원국은 현재 자체적인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은행권의 "신바젤협약"과 EU의 "Solvency II"등 각종 국제기구는 감독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국내 지급여력제도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② 문제점

- 현행 EU의 고정비율식 요구자본 산출방법은 적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험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치 못함.
 - 보험사별 요구자본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험사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못됨.
- 가용자본의 경우 위험의 완충장치로서 자본이 갖는 질적 수준을 고려하

지 않은 단순 가감 방식으로서,

- 이 경우 후순위채무 및 상환 우선주등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보험 산업 가용자본의 질적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 신종자본등 다양한 자본조달수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함.

2) 리스크평가제도(RAAS)정착

① 현황

- o 금융시장의 자유화, 종합화, 다양화 확대 추세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종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게 됨.
 - 따라서,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는 금융회사의 존립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대두
 - 선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리스크 평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o 국내에서 시행중인 경영실태평가는 과거지향적·사후규제적 감독방법으로 미래 부실가능성을 평가·조치하기에는 부적절
 - 이에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 Master Plan(2003.3)」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리스크평가제도(RAAS)” 운영기준이 작성되었으며, 시범운영 및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중에 있음.

② 문제점

- 동 “리스크평가제도(RAAS)”는 “3 Pillar” 감독규제의 “Pillar II”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임.
 - 따라서, 제도도입초기에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작성이 필수적임.
 - 또한, 현재의 “경영실태평가모형”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빠른 시간내에 통합운영방안이 필요함.
- RAAS제도의 핵심은 정성적 평가인 리스크통제기능 평가에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수준 등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검사담당역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상태는 높지 않은 상태임.